

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

수급자격자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(전화번호:)
수급정지에고사유	1. 직업소개 거부 2.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거부 3. 직업지도 거부	
거부일시		
구체적인거부의 부당성		
예 고 내 용	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소개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또다시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또다시 거부한 경우에는 2주 또는 4주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됩니다.	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79조제1항·제93조의2·제104조의8제8항·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·제115조의5·제125조의4·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

직 인

담당자() 전화번호() FAX번호()